



## 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평가원 간의 양해각서

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(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, '이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'라 함)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평가원(베이징시 하이단구 웨이공춘 2가, 이하 '중국고등교육평가원'이라 함) 간에 체결한다.

### 전문

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2년 설립되어 4년제 대학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대학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. 이와 관련하여, 부설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대학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한국고등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.

중국고등교육평가원은 2004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, 고등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위에 대한 평가 시행, 질 보증 관련 연구 수행, 해외 질 보증 기관과의 협동 및 교류, 중국 정부의 승인 하에 고등교육 부문 질 보증에 관련한 비정부 기관과의 협약체결 등을 담당하고 있다.

###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중국고등교육평가원

양 기관은 고등교육분야 질 보증 추진이라는 유사한 사명과 목표에 따라 상호 이익에 부응하는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 강화에 힘쓴다.

### 제1조 목적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중국고등교육평가원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양국의 외부 질 보증 활동 강화를 위해 우호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, 양국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### 제2조 협력분야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중국고등교육평가원은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#### a)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교환

- 양국의 고등교육기관에 관련된 문서 및 정보 교환
- 비밀유지를 우선으로 하여 양 기관이 관심 있는 연구 프로젝트나 기관 정보 등의 교환

- 양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평가 관련 활동 정보의 교환
- b) 양 기관 직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
- c) 양 기관이 수행하는 질 보증 프로젝트 협조 및 우수사례의 확산과 보급
- d) 상호 관심분야 공동연구 수행, 정기 학술교류 및 성과 공유
- e) 그 밖의 양측 합의에 근거한 활동에 관한 협력

### 제3조 양해각서의 변경

이 양해각서는 쌍방의 우호와 협력적 정신에 근거하여 서명한다. 양해각서의 조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4조 책임자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(체결 당시 허향진 박사)과 중국고등교육평가원 사무총장(체결 당시 안 우 박사)은 이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. 이 책임은 해당 협력 내용에 관한 양 기관의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5조 자원

특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, 이 양해각서의 조항 이행에 관한 비용은 양 측이 각자 부담한다. 다만 특정 협력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자원의 기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### 제6조 활동 일정

이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각 활동의 세부 내용은 쌍방의 협의 및 합의를 이 양해각서에 추가적으로 첨부한다.

### 제7조 효력

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고, 일방에서 3개월 이전에 서면통보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5년 간 유효하며, 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. 이 양해각서는 한국어, 중국어, 영어로 작성하되, 한국어판 및 중국어판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영어판은 참고로 한다.

체결일 2016. 7. 1  
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
 대한민국  
 허향진  
 회장 허향진

체결일 2016. 7. 1  
 중국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평가원  
 중화인민공화국  
 안우  
 사무총장 안 우